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17. 9. 22.>

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[] 발급 [] 재발급 []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15일
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
	연락처		주 소

※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자격요건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8조제1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 제 호				
	대학원 졸업자 (1호)	대학교 대학원 전공 ([] 석사, [] 박사)			
		졸업년도		학위명	
	교육과정 이수자 (2호)	교육과정		기록관리학 : [] 학사 역 사 학 : [] 학사 [] 석사, [] 박사 문헌정보학 : [] 학사 [] 석사, [] 박사	
		이수년도		전문요원 시험 합격일	년 월 일

※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자격증	번 호	발급연월일
재발급 신청사유		

※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자격증	번 호	발급연월일
변경사항		

[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

[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[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첨부서류	※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※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. ※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1.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2.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작 성 방 법

※ 발급 신청하는 경우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'대학원 졸업자' 란에,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'교육과정 이수자' 란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확인 · 결재	→	자격증 작성	→	자격증 교부
신청인		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(자격증담당부서)		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(자격증담당부서)		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(자격증담당부서)		